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2-82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2년 11월 23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 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2. 11. 23. ~ 2022. 12. 07.(15일)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이*순	1954. 05. 07.	0178200274100008845	₩31,860,000	경기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
2	조*원	1974. 10. 30.	0178200274100008215	₩1,650,000	충북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
3	신*호	1966. 10. 14.	0178200274100008866	₩12,564,720	충북 청주시 흥덕구 주현로
4	임*숙	1967. 02. 10.	0178220274100001769 0178220274100001767 0178200274100000173	₩21,290,860 ₩16,317,200 ₩32,019,710	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길
5	최*관	1962. 11. 20.	0178200274100000174 0178200274100000145	₩4,339,000 ₩150,000	충북 충주시 연수서 3 길
6	주식회사 시***	150111-0220***	0178200274100003301	₩4,109,220	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
7	박*환	1986. 11. 11.	0178200247100008223	₩12,474,000	충북 괴산군 연풍면 유상 1 길
8	박*자	1967. 02. 10.	0178200274100008216	₩8,310,000	충북 괴산군 장연면 충민로
9	강*식	1968. 05. 25.	0178200274100003484	₩33,240,000	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
10	이*영	1966. 01. 04.	0178200274100008222 0178200274100008863	₩17,949,600 ₩20,941,200	경기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
11	고*익	1967. 02. 05.	0178200274100008220	₩37,832,400	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2	전*현	1988. 02. 19.	0178200274100008862	₩44,874,000	충북 충주시 신니면 중원대로

4. 문의처 :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

(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, ☎ 042-347-2103, 2105)

5. 공고내용 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
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
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
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
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